

은행은 근담보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근 담 보

근담보권설정변경계약서

(피담보채무범위변경·근담보권결산기·존속기간변경용)

★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(당사자란, 변경내용 및 계약서 끝부분)은 근담보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인감대조

채 권 자 겸 근 담 보 권 자 주 소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인
채 무 자 주 소		인
근담보권설정자 주 소		인

위 당사자 사이에 이미 설정한 아래 표시 근담보권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.

제1조 피담보채무범위의 변경

근담보권자와 근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범위를 에서 정한 채무(원본, 이자, 위약금, 지연배상금, 근담보권실행의 비용, 근담보물건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근담보물건의 흠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등 기타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.)로 변경하기로 합니다.

특정근담보	채무자가 채권자(본·지점)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
20 년 월 일자	약정서
20 년 월 일자	약정서

한정근담보	채무자가 채권자(본·지점)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거래,	거래,
거래,	거래

제2조 근담보권결산기의 변경

근담보권자와 근담보권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로 결산기를 변경하기로 합니다.

지정형	
	20 년 월 일

장래지정형	
	<p>정하지 않습니다.</p> <p>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담보권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담보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,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,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.</p>

제3조 근담보권 존속기간의 갱신

- ① 근담보권자와 근담보권설정자는 근담보권 존속기간을

	년	월	일
--	---	---	---

 까지 연장하기로 합니다.
- ② 근담보권 존속기간의 갱신은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장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.

제4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

- ① 근담보권설정자는 제3조의 변경계약이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근담보권 변경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근담보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.

※ 근담보권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(기재예시 : 수령함, 들었음)

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	성 명 : (인)
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	성 명 : (인)

■ 기 설정한 근담보권의 표시
 [동산담보]

1. 설정계약		년 월 일자 근담보권설정계약서					
등 기	지방법원	등기소	년	월	일	등기접수 제	호
2. 공동담보의 표시	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	일련번호	동산의 종류		보관장소/특성		유익적 기재사항
순 위							
소 유 자							

